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부정 사례

김 지 령*
이 준 호**
권 선 국***

부산저축은행과 4개의 관계회사 저축은행 모두 2011년 2월에 영업정지 처분되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의 PF대출에 계속 집중하여 외형으로는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연체율은 증가하였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공모하여 가공의 SPC를 설립하고 막대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위한 지역금융기관이 아닌 대주주 및 경영진의 사금고로 유용되었고, 부진한 SPC사업을 정상여신으로 위장하고자 불법대출을 반복하였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여 BIS비율을 높게 발표하였다. 그밖에도 흑자분식을 이용한 부정은 다양하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손충당금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도 크다.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내세운 완화된 정부정책과 금융감독원의 소홀한 감독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로 인한 부실을 키운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비리사건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이용하여 온갖 비리로 부실하게 된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이용된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더 나아가 이를 예방하는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규제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대손충당금,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 사례, PF대출

1. 서 론

저축은행은 1972년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를 취급한다. 2009년 6월 말 현재 106개 은행, 346개 점포에서 자산 75조 929억원, 여신 57조 20억원, 수신 65조 8,572억원, 거래자 수 약 463만명에 이르렀다(저축은행중앙회).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에서 시작한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는 부산지역 제1의 저축은행인 부산

저축은행까지 번졌다. 1997년에 외환위기를 통하여 대규모 부실이 발생되어 과반수의 저축은행이 퇴출되었고 2003년 벌어진 가계신용위기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에 또 다시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그런 위기 때마다 금융기관의 부실과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해결방안과 대응책이 쏟아져 나왔었고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교훈도 얻었을 법하지만, 2011년에 다시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부산저축은행 등 9개사가 영업정지 되었고, 9월에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한 7개의 저축은행들이, 2012년 5월에 솔로몬, 한국 등

논문접수일: 2012. 06. 18. 1차 수정본 접수일: 2012. 11. 15. 게재확정일: 2013. 03. 10.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jr_kim@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bama90036@knu.ac.kr),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skwon@knu.ac.kr), 교신저자

4개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였다. 사실상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는 미리 예견되어 있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부동산 경기의 호황 속에서 2005년부터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대출을 크게 늘렸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라 PF대출의 부실이 속출하면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 등으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의 부실이 심화되어 해당 저축은행은뱅크런이 발생하고, 정부는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은 PF대출의 부실로 시작되었지만 부실의 이면에는 대규모로 벌어진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회계부정과 불법대출, 금융당국의 유착비리와 부실감사 등이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이 불법대출은 물론 영업정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친인척의 돈을 미리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전체 비리 규모는 4조 5,942억원의 불법대출, 2조 4,533억원의 분식회계, 6,00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및 부정거래가 보고되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1.5.2.).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이 주 고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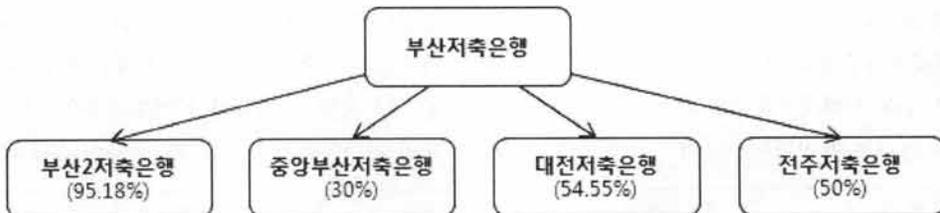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최대 규모인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이용하여 부실의 원인과 비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규제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부산저축은행의 현황

2.1 연혁 및 현황

부산저축은행은 관계사를 통합한 자산 규모가 2010년 6월 말 기준 9조 4,270억에 달하는 저축은행 자산순위 1위인 국내 최대의 저축은행이다. 부산저축은행은 1972년 8월에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1999년 1월, 새부산신용금고를 인수하여 부산2저축은행을 개점하였고, 2006년 4월 서울중앙저축은행을 우리은행, KTB투자증권 등과 공동 인수하여 관계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편입하였다. 2008년 9월에 충남 대전의 대전저축은행을 KTB투자증권 등과 공동 인수하여 대전저축은행을 관계사로 편입하였고, 2008년 11월 전북 전주의 고려저축은행을 부산2저축은행과 공동 인수하여 전주저축은행의 이름으로 관계사로 편입하였다. <그림 1>은 2010년



자료: 부산저축은행 반기보고서 2010.12.31.

<그림 1> 부산저축은행의 관계회사 현황과 지분구조

12월 말 현재 부산저축은행과 4개 관계사 간의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산저축은행은 전국에 걸쳐 4개의 관계사를 가진 거대한 저축은행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과 4개의 관계사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모두 예금인출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4월 부산저축은행과 그 관계사 4곳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5개사 모두 자본잠식 및 BIS자기자본비율의 기준미달이 드러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이 부과되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1.4.29.).

2.2 재무정보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PF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은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소비자 금융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ROA는 2005년 말 1.4%에서 2010년 3/4분기 말에 -2.9%였다. 부산저축은행도 2005년 말 4.3%에서 2010년 말에 -4.9%(당기순손실 1,999.47억원 / 총자산 41,221억원)로 급감하였다. 예대마진의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PF대출 부실화에 따른 총당금 적립액이 급증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8년에 1,959억원, 2009년에 2,434억원, 2010년에 3,12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당기실적은 2008년에 당기순이익 768억원, 2009년에 279억원, 2010년에 적자로 전환하여 당기순손실 1,999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1>은 부산저축은행의 최근 3개 연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의 요

<표 1> 부산저축은행의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항 목	제 39기 (2008. 6. 30.)	제 40기 (2009. 6. 30.)	제 41기 (2010. 6. 30.)
I. 영업수익	288,442	360,001	408,789
이자수익	195,911	243,368	312,030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26,651	37,390	22,250
수수료수익	65,764	79,121	61,192
배당금수익	116	122	322
기타영업수익	-	-	12,995
II. 영업비용	209,762	322,406	517,280
이자비용	120,404	174,527	208,920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	14,490	26,385	17,867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	43,066	69,012	254,615
수수료비용	3,908	4,466	4,501
판매비와관리비	21,961	17,468	17,975
기타영업비용	5,933	30,548	13,402
III. 영업이익	78,680	37,595	△108,491
IV. 영업외수익	19,225	7,006	244
V. 영업외비용	872	9,005	117,995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7,033	35,596	△226,242
VII. 법인세비용	20,208	7,680	△26,295
VIII. 당기순이익	76,825	27,916	△199,947

△는 부의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단위: 억원)

구 분	2009.6.30.	2010.6.30.	2010.9.30.	2010.12.31.	2010.12.31. ⁽¹⁾
총 자산	32,416	41,221	40,634	37,435	24,658
여 신	25,370	32,681	32,821	32,814	32,814
부 채	29,439	38,428	38,237	37,651	37,651
수 신	26,859	34,037	33,780	34,453	34,453
자기자본	2,977	2,793	2,397	△216	△16,800 ⁽²⁾
납입자본금	217	427	427	427	427
BIS자기자본비율	10.11%	8.33%	7.16%	5.13%	△50.29%

(1) 감사원의 감사결과 반영 (2) 2011. 2월 말 기준 재산실사 결과
 자료: 금융감독원 2011.8.3.

약 손익계산서이다.

저축은행 전체의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2010년 말까지 9%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3월 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7.57%로 하락하였다. 부산저축은행도 〈표 2〉와 같이 2010년 12월 말 BIS자기자본비율은 5.13%를 기록하였지만, 영업정지 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50.29%로 나타났으며, 1조 6,8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다. 〈표 2〉는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태(금융감독원 2011. 8.3.) 현황으로서 2010년 말 자체 보고한 재무상태와 2011년 2월 말 기준 재산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및 기준미달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III. 부산저축은행의 분식과 문제점 해결책

3.1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배경

2011년 1월에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

으로, 2월에 부산저축은행과 4개의 관계회사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동성 부족과 자기자본의 잠식을 사유로 예금을 비롯한 입출금 업무를 중단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화 원인은 외부환경에 대한 미흡한 대응, 내부 취약성, 정부정책의 실패, 감독상 한계 등으로 요약된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부실의 원인이 되었는데 첫째, 서민대출시장의 경쟁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1998년 1월 은행권 여신금지업종¹⁾이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소비자 금융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대출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2002년 말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저축은행은 소액신용대출 2조 8,000억원 가운데 90%가 부실화되면서 신용대출을 기피하였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출시장에서 영업력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2009년에 3,0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저축은행은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영업형태로 변화하였다. 둘째,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는데, 그 중 시행사의 토지매입을

1) 골프장, 콘도업, 대형식당, 주점업, 부동산업, 사우나, 도박장 운영업 등 과소비 또는 향락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을 은행의 여신대상에서 제외(한국은행: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관한 규정)

위한 브릿지론²⁾이 69%로 2010년 말 8조 6,000억원 규모였다(금융감독원 2011.8.3.). 시행사가 일단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고, 정부 허가를 받아 시공사, 즉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어 시행사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일명 '본 PF대출'이다. 시행사들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저축은행에서 빌렸던 브릿지론을 갚는다. 그런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에 따른 본 PF대출로의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이 급증한 것이다.

내부 취약성으로는 우선 취약한 지배구조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들 수 있다. 자본과 사회적 신용도가 취약한 개인 대주주가 다수이고 대주주의 변칙적인 경영관여 비중이 높다. 그러므로 대주주의 불법대출과 같은 '사(私) 금고화'가 경영부실을 가져왔다. 부산저축은행 이외에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개 중 12개는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형화 및 계열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시 동반부실을 가져왔다.³⁾ 외형이 확대된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은 조직적으로 부실을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였다. 취약한 내부구조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내부견제장치도 소홀하였다.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자산운용에 치중하면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도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였

고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 시스템도 미흡한 상태였다.

저축은행이 부실하게 된 배경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감독상 한계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2000년 10월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었다. 고금리 수신에 따라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상품으로 치우친 반면, 정부가 은행과 비교하여 건전성 규제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 위기 대처능력이 저하되었다. 2005년 12월 저축은행의 계열화 허용, 2006년 6월에 8·8클럽 제도를 통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완화, 2008년 9월에 저축은행의 M&A 활성화 등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 8·8클럽이란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⁴⁾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8·8클럽은 80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6년에 제도를 시행할 당시만 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지만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105개 저축은행 중 56곳이 속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매일경제 2011.2.20.). 또한 적기시정조치기준은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상화 조치인데, BIS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은 8%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5%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저축은행

2) PF대출은 '본 PF대출'과 '브릿지론'으로 구분되는데 '본 PF대출'이란 공사를 착공하였거나 분양을 개시한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말하며, '본 PF대출' 이전 단계의 모든 대출은 '브릿지론'으로 간주한다.

3) 과거 자기자본의 80% 및 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만 타 저축은행의 지분취득이 허용되었으나, 2002년 이후 소액신용대출 부실로 구조조정 대상의 저축은행이 증가하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5년에 지분 취득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2010년에 10여개의 저축은행그룹이 형성되고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시연(2012)은 해외 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주식보유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고 하였다. 미국은 상업은행과 저축기간의 소유 규제가 구분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제정 이후 규제의 차이가 없어졌다. 일본의 제2지방은행은 신용금고, 조합과 함께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일반은행과 동일한 소유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4) 금융사 대출은 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정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곳에 대한 대출로서 연체기간은 1개월 미만이다. '요주의'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한다.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로서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회수의문'의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 '추정손실'은 1년 이상의 채권을 말한다.

의 부실을 증가시킨 것이다. 둘째, 대주주와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차명을 이용하며 다단계로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이 만연하는데도 금감원의 검사권한 제약으로 적시에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적발이 지연되고 부실이 확대되었다. 셋째, 검사대상기관과의 일부 유착비리를 들 수 있다 (한국일보 2011.5.16.).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은 퇴직 예정인 직원을 추천해서 사실상 공생관계를 형성해왔다. 금감원 출신 간부들이 상근감사로 활동하면서 직위 보전을 위하여 불법여신은 물론 분식회계까지 가담한 것이다.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1국장 출신인이 전직 간부는 2007년 퇴직 후 다른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부산저축은행 또는 그 관계사가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3.2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과 분석의 유형

3.2.1 PF 대출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98개 전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82.1조원으로 2005년 말 41.7조원 이후 2010년 말 86.8조원까지 연평균 15.8%

로 증가하였다. 2011년 들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1년 1/4분기 중 4.7조원 감소하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저축은행의 꾸준한 외형적 성장은 저축은행들이 2003~2004년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이후 서민대출을 기피한 가운데, 2005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호조, 여신한도의 완화 등에 편승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하여 얻어진 기형적 산물이었다. 그 결과 전체 저축은행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46.5%를 차지하였고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은 12.9%로서 일반시중은행의 PF대출 비중 9.3% 대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2011.8.3.).

〈표 3〉은 금융권 전체의 PF대출 및 건전성 현황으로 2010년 말 현재 전 금융권의 PF대출 규모는 66.5조원으로서 부실한 PF대출 정리, 건전성관리 강화 등으로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2010년 말 12조 2,23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이고 PF대출 연체율은 2010년 말 25.1%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PF대출은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의 기초를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부여한다. 미국에서

〈표 3〉 전 금융권 PF대출 및 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권역별	2009.6.30.	2010.6.30.	2010.12.31.
PF대출	전 금융권	84.0	74.2	66.5
	은 행	54.1	44.9	38.7
	저축은행	11.0	11.9	12.2
	보 험	5.5	5.4	4.9
	금융투자	2.8	2.5	2.2
	기 타	10.6	9.5	8.5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9.6%	8.7%	25.1%

자료: 금융위원회 2011.6.14.

유전개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건설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활황과 PF대출이 가진 높은 수익률을 이용, 소액대출에 대한 부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고위험·고수익인 PF대출을 증가시켰고 이를 통해 PF대출은 저축은행의 주력상품이 되었다. PF대출은 우선 실질적인 담보가 없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이다.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여신이 주어지며 사업주의 취약한 담보력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정부, 시공사, 보험사, 금융회사) 간의 위험분담이 요구되어 높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PF대출이 다른 금융권에 비하여 고위험인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대형 시공사를 통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반면, 저축은행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하여 엄밀한 대출심사 없이 브리지론 형태로 PF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연체가능성 및 부실위험이 높다.

〈표 4〉는 우수 저축은행으로 분류된 저축은행과 이를 제외한 저축은행의 대출 구성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 우수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의 비중

이 우수 저축은행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저축은행의 경우 업종별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지만 그 외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인 PF대출에 집중하는, 취약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PF대출 관련 금액 및 비중은 〈표 5〉와 같다. PF대출은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 대규모 부실 사태를 초래한다.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6월 말 PF대출 잔액이 9,610억원이었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2010년 말 대출 잔액은 무려 2조 3,568억원으로 145% 정도 급증하였고, PF대출은 전체대출의 72%에 달했고 2010년 말 PF연체율은 35%에 이르렀다(서울신문 2011.8.22). PF대출의 집중과 부실은 결국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다.

3.2.2 SPC의 설립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는 특수목적 피투자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2002년 미국의 엔론사가 행한 분식회계

〈표 4〉 저축은행의 대출 구성 현황

구분	가계대출	부동산대출	PF대출	도소매	숙박·음식
우수 저축은행	20%	27%	7%	9%	5%
그 외 저축은행	10%	29%	22%	6%	3%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1.7.20.

〈표 5〉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

(단위: 백만원)

대출 현황	2008.6.30.	2009.6.30.	2010.6.30.	2010.12.31.
PF 대출	961,007	1,120,538	2,193,551	2,356,842
전체 대출	2,028,739	2,537,004	3,286,064	3,281,378
PF/전체 비율	47 %	44 %	67 %	72 %

자료: 부산저축은행 반기보고서 2010.12.31.

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의 엔론사는 SPC를 통하여 부채를 떠넘기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SPC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데 그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⁵⁾

부산저축은행은 금융회사로서 직접 부동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와 경영진이 약 120여개의 SPC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대리인을 세워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4조 5,942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및 4개의 관계사 저축은행 전체 PF대출의 잔액인 5조 2,000억원의 88%에 해당한다. 나머지 적은 비율만이 일반인에게 대출된 것이고, 대부분은 5개 은행그룹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SPC, 대주주 등에게 대출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PF대출 잔액 규모는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42.6%, 전체 금융권의 7.8%에 해당한다(법률신문 2011.5.2.).

SPC의 구성을 보면 <표 6>과 같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관련 SPC가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 은행업무와는 무관한 문외박식 투자사업을 확장해왔다. 검찰 조사결과 SPC 120개 가운데 제대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했다. 또한 직원

SPC에 대한 거액의 대출금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허가 지연, 이자연체 등으로 부실채권화 되자,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들 명의로 약 7,500억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연체 이자를 상환하거나 부실대출금을 상환하여 정상 여신인 것처럼 분식하였다.

SPC에 관한 구체적인 부당대출 배임 사례로는 5개의 차명 SPC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직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수익증서를 담보로 2,897억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사업부지 매입 잔금이 부족하게 되자, 담보를 임의 해지하고 시행업자가 이 투자를 담보로 타 금융기관에서 1,79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현재 채권회수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SPC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50억원 정도를 무의미하게 소모하였다.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대표이사에게 급여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법인 운영비를 쓸데없이 지출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리로 평균 연 11%를 적용하고 대출금리의 1.5배인 16.5%를 자문수수료로 받았다. 사실상 이자 명목으로 대출의 27.5%가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유입된 것이다. SPC를 통한 PF대출 총액 약 4조 6천여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표 6> 부산저축은행의 120개 SPC 운영 현황

구분	영업 목적
건설업(83)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41), 휴양지 개발사업(11), 골프장(8), 도시개발사업(9), 납골당(4), 공장·조선소(4), 상가 등(6)
해외건설사업(10)	캄보디아(9), 인도네시아·발리(해수욕장 개발)(1)
선박투자사업(9)	선박회사(9)
금융업(6)	리스크캐탈(2), 서울신용평가 주식취득(2), 골프장 주식투자 회사(2)
기타(12)	화학물질 탱크터미널(2), 모래사업(2), 태양에너지 개발(1), 실버타운(1), 운전학원(1), 쇼핑, 공장용지 분양 등(5)

자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1.5.2.

5) 본 연구 강의지침의 생각해 볼 문제 3.에 포함시켜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자문수수료는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PF 사업장의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어,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과 동시에,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 키운 것이다(한국경제 2011.7.31.).

3.2.3 분식회계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표 7>과 같이 2009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결산과정에서 5개 은행의 합계액으로 1조 1,320억원, 2010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결산과정에서 5개 은행의 합계액으로 1조 3,213억원, 즉 2년간 합계 2조 4,533억원의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을 하였다.

분식회계 방법은 이자를 연체중인 휴면 SPC에 신규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명의를 빌려 신규 대출을 해 주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대계상 하였다. 또한 연체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수법을 이용하여 평소에 일상적으로 회계

분식을 한 것이다.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결산기가 임박하면 각 계열 은행별로 가결산을 하고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가 결정되면 PF 사업장별로 신규대출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금융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 회계담당 직원, 영업담당 직원들이 총 동원된 것은 물론, 분식회계를 감시해야 할 감사들도 분식의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룹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에 따르면 정상(0.5%이상), 요주의(2%이상), 고정(20%이상), 회수의문(75%이상), 추정손실(100%)의 5단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부실채권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저축

<표 7> 부산저축은행의 2년간 분식회계 금액

(단위: 억원)

기간	저축은행	분식 이전		분식 이후		분식금액
2008.7.1. ~ 2009.6.30.	부산	당기순손실	5,800	당기순이익	279	6,079
	부산 2	당기순손실	3,925	당기순이익	86	4,011
	중앙 부산	당기순손실	545	당기순손실	50	495
	대전	당기순손실	542	당기순손실	73	469
	전주	당기순손실	323	당기순손실	57	266
	소계	당기순손실	11,135	당기순이익	185	11,320
2009.7.1. ~ 2010.6.30.	부산	당기순손실	9,025	당기순손실	1,999	7,026
	부산 2	당기순손실	5,015	당기순손실	689	4,326
	중앙 부산	당기순손실	483	당기순손실	80	403
	대전	당기순손실	1,990	당기순손실	897	1,093
	전주	당기순손실	359	당기순이익	6	365
	소계	당기순손실	16,872	당기순손실	3,659	13,213
2년간 분식 합계		당기순손실	28,007	당기순손실	3,474	24,533

자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1.5.2.

은행의 경우도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금융기관의 회계분식은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특히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적립은 경영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식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쉽다. 금융감독원이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개념적 정의와 분류 예시만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와 5% 이상 올리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3% 미만일 경우는 경영개선요구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조치 명령이 내려져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BIS자기자본비율은 재무건전성 판단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부실한 저축은행은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순위채권 발행, 유상증자, 위험자산의 축소 및 수익성 증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조정을 하려는 유인을 가진다(박연희 2005). <표 8>은 부산저축은행과 그 관계사들이 분석회계를 통해 조작한 BIS자기자본비율과 감사원의 검사결과 후 BIS자기자본비율이 검사 이전과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공시한 5.13%의 BIS자기자본비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비율이었다.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은 3년간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자회사 저축은행의 손실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대신에 독자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2008년 11월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한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11월까지 대전저축은행의 손실을 자체 비율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음으로써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공시했던 것이다(이대일 리 2011.2.17.). 부산저축은행이 실제로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느라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BIS자기자본비율은 비교적 높게 발표되었다. 부산2저축은행도 2010년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6%였지만 자회사 부실로 인하여 125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했었다.

3.2.4 후순위채 발행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⁶⁾은 2004년에 처음 발행된 이후 자본의 확충 및 재무건전성 비율의 하락방어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행이 증가하였다. 후순위채권은 일반 저축성예금 보다 금리가 높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부실채권을 상환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부

<표 8> 금융감독원의 부산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확인 결과

구분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2010.12월말 자체보고	5.13%	6.00%	3.56%	(-)3.18%	5.63%
금감원 검사결과 ⁽¹⁾	(-)50.29%	(-)43.35%	(-)28.48%	(-)25.29%	(-)11.56%

(1) 감사원의 검사 결과 반영, 자료: 금융감독원 2011.8.3.

6)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선 순위 채권자들의 부채를 전부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이라면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받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허위분류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며, SPC가 벌인 부동산사업의 이익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대출금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식하였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 2008년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피해자 총 1,715명에게 594억원의 후순위채를 2009년에 판매하였다. 부산2저축은행 역시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연도 2008년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2009년에 피해자 총 1,160명에게 38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였다(파이낸셜뉴스 2011.7.20.).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도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과 6월에 후순위채 발행 당시 기존 고객에게 "예금을 만기이전에 해지하고 금리가 훨씬 높은 후순위채를 사면 연 1% 수준의 중도해지 이자가 아닌 원래 정한 연 4~5%의 예금이자를 그대로 주겠다."며 투자를 권하였다. 목돈을 맡겼던 779명은 이자 손해 없이 연 8.5%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이 자체 발행한 채권을 고객에게 팔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이런 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1년 3개월이 흐른 2010년 9월 20일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에 15일짜리 단기 자금 1,750억원을 빌려주었다. 물론 만기가 도래한 2010년 10월 5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연체 이자율을 18%에서 6%로 할인하고 만기를 연장하였다(동아일보 2011.7.25.).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일부 예금자의 인감을 본인의 동의 없이 복사한 뒤 보통예금 통장을 후순위채권으로 변조한 통장 10여개가 공개되었다. 보통예금 가입자가 예금보험

공사에 예금 피해보상 가치급금⁷⁾ 2,0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후순위채권이라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예금 종류가 변조된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후순위채권의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한 결과 일부 직원들은 본인이 후순위채권을 사들였다가 날리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11.5.5.).

3.2.5 흑자분식을 이용한 부정

인위적인 흑자분식에 기초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서 6년간 총 640억원을 배당하였는데, 대주주 및 경영진이 329억원을 수령하였다. 특히 회계연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막대한 손실로 배당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회계분식하여 거액의 배당금, 연봉 및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대주주가 배당받은 내역은 2008년에 77억원, 2009년에 26억원, 2010년에 2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주주 및 경영진 4명의 연봉 및 상여금은 2008년에 49억원, 2009년에 22억원, 2010년에 9억원이었다.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0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기적 부정거래도 행하였다. 2010년 1월부터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PF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대손충당금 2,300여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공하였다. 모장학재단과 모학교법인은 재무제표상 부산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5년간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

7)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가 되지만, 돈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하여 예금 잔액 중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

이 보장된다고 오인하고 각 5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국민일보 2011.8.2.).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부산저축은행이 KTB자산운용을 통해 1,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은 것은 금감원이 사실상 유상증자를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 금감원의 자문을 받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관한 정관을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 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로 고친 뒤 임시주총을 통해 이 개정안을 추진 받았다. KTB 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넣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두 기관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결국 1,000억원을 잃었다.

3.3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관계자

3.3.1 최대주주와 경영자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부정과 불법대출에 관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리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2004년 5월 이사회에서 주식 공개매수 방식을 통한 상장폐지를 결의하였고, 그해 12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 시점은 부산저축은행이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하고, 위장 SPC를 통하여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에 나선 때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컨설팅회사, 공인회계사 등을 끌어 들여 120개 SPC를 설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상장폐지 전후를 지목하고 있다(국민일보 2011.5.23.). 부산저축은행에서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투자 결정, 사업성 검토 등 대출심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은 120여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4조 5,942억원을

불법대출 받았다. 설립된 SPC 회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세웠다.

SPC를 이용한 불법대출 이외에도 대주주와 경영진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흑자분식을 통하여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또한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서 제3의 업체에게 200억원을 대출하면서 그 중 44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우려되자 대주주는 부인의 정기예금을 영업정지 이전에 해지하였다. 대주주는 영업정지 다음 날 자신 명의 임야에 친구 명의로 1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다른 임원진은 영업정지 전후로 주식 계좌에서 수억원 가량을 인출하여 친척에게 교부하거나 자신 명의 임야를 증여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우려하여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밝혀졌다.⁸⁾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도덕적 헤이 가 극에 다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연과 지난 정권의 비호 아래 기형적으로 급성장한 부산저축은행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부실화 되면서 구멍 로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현 정권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8·8클럽 제도의 도입이나 막대한 국부의 손실을 남긴 채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된 캄보디아의 캄코시티에 대한 투자도 학연이나 정경유착이 의문시 되고 있다.

3.3.2 회계법인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 원인 중의 하나는 회계법인들의 부실감사였다. <표 9>와 같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가운데 부산·중앙부산·전주 저축은행

8) 부당인출입이 확인된 금액은 대부분 임직원 이 영업정지 사실을 통보해 준 것이 밝혀지거나, 영업시간 이후에 예금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당인출로 확인된 8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800여억원의 인출금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예금보험공사가 일괄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저축은행과 예금 인출자 간의 공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곽아람·김용재 2011).

은 다인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았고 부산2저축은행은 성도회계법인, 대전저축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 있었지만, 2조 4,533억원의 분식회계를 적발한 회계법인은 이들 중 하나도 없었으며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대전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저축은행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저축은행의 비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잘못된 점은 불법대출을 발견하지 못한 점과 대손충당금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회계법인은 기업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는 회계법인의 형식적인 감사에 대한 변명이지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다인회계법인의 경우 통상 1주일씩 걸리는 회계감사를 3일 만에 끝내버렸다(한국일보 2011.7.27). 부산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맡았던 다인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2명과 부산2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성도회계법인 소속의 2명은 외부감사를 하면서, 은행 임원들과 결탁하여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부실감사 대가로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한국일보 2011.8.19.).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모두 회계부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따른 제재와 처벌을 받을 것이다.

3.3.3 금융당국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의 감시를 받지만 실제로 사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은행은 대주주 지분이 4%로 제한되지만 저축은행은 100%를 소유할 수 있어서 대주주 전횡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손실이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주고 이익이 나면 대주주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과 비리가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통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비리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들이 보고한 BIS자기자본 비율이 기준미달이었고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사전의 영업정지 정보 유출, 특혜인출 등에 대한 의혹도 받았다. 더욱이 영업정지 이전에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6차례 감사를 실시했었다는 사실을 두고 부실에 대해 알면서도 덮어두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표 9〉 부산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법인 및 감사의견

저축은행명	회계연도 2009 2009. 6. 30.	회계연도 2010 2010. 6. 30.
부산저축은행	다인회계법인 (적정)	다인회계법인 (적정)
중앙부산은행	삼일회계법인 (적정)	다인회계법인 (적정)
전주저축은행	삼일회계법인 (적정)	다인회계법인 (적정)
부산2저축은행	성도회계법인 (적정)	성도회계법인 (적정)
대전저축은행	삼일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의견거절)

자료: 은행별 감사보고서

맡으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금감원 간부가 체포되었다(YTN 2011.5.9.). 이러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과 유착비리는 금융계에서도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 따른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와 같이 경제부처나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감사나 이사 지위를 차지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의 창구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Horiuch and Shimizu (2001)는 1996년 3월 현재 125개 지역은행을 대상으로 1977년부터 1992년까지의 낙하산인사 실태를 조사하였고, 재무성과 중앙은행 출신의 낙하산인사를 받아들인 지역은행은 그렇지 않은 지역은행보다 자기자본비율을 더 낮게 유지하거나 무수익여신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음을 실증분석 하였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기능이 무력화된 것은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구조적, 관행적 유착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 기구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서로 간의 업무협조가 힘들고 이러한 이유로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고,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구분된 조직을 검사, 감독 등의 기능별로 재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자 금융감독 평가는 민간으로 위임하고 제재권을 금융위원회로 이양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대형 및 계열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된다(매일경제 2011.8.2.).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4급(서기관) 이상, 금융감독원 2급 이상 간부들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문제는 차기 정부로 미루어졌다.

김동열·한상범(2012)이 2010년 현재 105개 저축은행의 2001년부터 2010년에 걸친 경영성과와 낙하산인사 실태, 정책변화 등을 토대로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하산인사 관련해서 통계상 유의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지만 정책변화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제시하였다.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정책과 8·8클럽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정책은 저축은행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2002년 3월에 허용된 저축은행의 명칭 사용을 전후하여 수익성, 총자산경비율, BIS자기자본비율 등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2006년 5월에 허용된 우량저축은행(소위 8·8클럽)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를 전후하여 자본충실도는 증가하였으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위험도는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즉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로 인하여 여신규제완화 혜택을 악용하여 외형을 키우는 경영전략에 집중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고 해석하였다.

3.4 저축은행의 문제점 해결책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하여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금융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 부동산 PF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사례이다. 그러나 서민 또는 비우량 중소기업과 같은 주 고객의 신용위험이 높아 리스크관리 역량을 크게 확충하지 않을 경우 안전한 고객을 찾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저금리의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금리 경쟁력을 높여 성장을 기대할 수 있

다. 최근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⁹⁾ 신용회복기금¹⁰⁾ 등을 조성하여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신용보증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기회요인으로 가능하나, 저성장 추세는 서민층의 경제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저축은행이 비상장기업이고 특정 지배주주가 지배하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이 낮다. 저축은행은 6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지만 저축은행이 의도적으로 공시 일자를 지연시키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재무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예고도 없이 게시하는 방식이어서 고객들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소비자가 느끼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실로 크다. 게다가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 비율이 1% 이하로 하락하면 예고도 없이 영업정지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저축은행 자체의 건전성 개선과 감독기관 기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대출한도¹¹⁾와 동시에 PF대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신설하고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을 위하여 그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수 대주주의 전횡 및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으로 거액을 직접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부실하게 되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도 일관성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자산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회 중심으로 과학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업계 전반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수익의 80% 정도가 대출금 이자로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손상각비와 같은 신용리스크 관련손실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액 신용공여¹²⁾ 한도를 신설하여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불법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그리고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적기시정조치¹³⁾의 기준이 되는 BIS자기자본비율¹⁴⁾은 이미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화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그 소유구조가 단기간에 개선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저축은행은 상장을 의무화하여¹⁵⁾ 소유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도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¹⁶⁾를 엄격히 실행한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반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금감원의 소수(5개팀 30여명 내외)가 전국의 100여개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및

9) 중앙정부와 해당 시, 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마다 16개 신용보증재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퀴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200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출범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신용회복기금).

11)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한도가 현재 30%에서 2011년에 25%, 2013년에 20%로 축소된다. 또한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PF대출의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은 총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금융위원회 2010.9.17.).

12) 거액 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상호저축은행법 개정 2010.3.22.).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집중대출할 경우 해당 대출자가 부실해지면 저축은행도 동반 부실화함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13)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5조

14)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현행 5% 미만에서 7% 미만의 수준으로 강화되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010.9.17.)

15) 예를 들어 자산이 1조원 이상일 경우 저축은행의 상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마땅하지 않지만, 정찬우(2010)는 자산규모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지닌 저축은행이 상장을 하는 경우 업무영역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상장폐지 시 자산운용의 폭을 제한하는 등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6) 2010년에 개정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과 최근 입법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주기적인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요구한다.

부분 검사를 수시로 담당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검사원들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었다. 2년마다 실시되었던 대형 저축은행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산공시 및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도 강화하는 등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감원 임직원의 저축은행 감사로의 취업을 제한할 제도가 정비된 바 있다. 그리고 연 1회 검사를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이 소신껏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만일 부정행위를 묵인한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외형이 커지는데 비례하여 리스크관리 능력도 함께 개선하도록 유인하고 건전성 감독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IV. 결론

2011년 초 삼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추진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그 하반기에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7곳을 더 퇴출시키고, 6곳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이 6곳 중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한 4곳을 2012년 5월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부과함으로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곳에 영업조치가 내려졌다.

1972년 지역의 서민금융회사로 출범한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개명되고 예금보호한도가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카드사태로 부실이 깊어진 저축은행에 인수합병이 허용되었고 우량 저축은행은 대출규제도 없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규모와 영업범위를 키운 저축은행들이 SPC를 설립하여 고위험, 고

수익의 PF대출에 치중하였고,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저축은행의 부실이 급증하였다. 외부 책임도 막중하여 10여년에 걸친 정부의 정책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우는데 일조하였고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격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감독당국은 퇴직간부들의 낙하산 인사로 저축은행의 비리를 묵과하였다. 무리한 PF대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정치권 및 금융관료들과의 유착,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이 부실경영의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마련하고 감독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아람·김용재(2011), "저축은행 부당인출예금의 회수방안-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8(2), 165-193
- 김동열·한상범(2012),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변화와 낙하산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0(1), 179-205
- 박연희(2005),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및 BIS자기자본비율관리," *세무와 회계저널*, 6(2), 67-85
- 이시연(2012), "저축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필요성," *한국금융연구브리프*, 21(4), 3-9
- 정찬우(2010),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 Horiuchi, A. and K. Shimizu(2001), "Did Amakudari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 in Jap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5(3), 573-596
- 국민일보(2011.5.23.)(2011.8.2.), <http://www.kukinews.com>
- 금융감독원(2011.8.3.),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

- 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황 보고, <http://www.fss.or.kr>
- 금융위원회(2010.9.17.)(2011.11.1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2011.6.14.), 301회 임시국회 업무현황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1.4.29.),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부과,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1.7.20.),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개정 2010.3.22.), 상호저축은행법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011.5.2.),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기소 관련자료
- 동아일보(2011.7.25.),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2011.2.20.)(2011.8.2.), <http://www.mk.co.kr>
- 법률신문(2011.5.2.), <http://www.lawtimes.co.kr>
- 부산저축은행 반기보고서(2010.12.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서울신문(2011.8.22.), <http://www.seoul.co.kr>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http://www.koreg.or.kr>
- 신용회복기금, <http://www.badbank.or.kr>
- 이데일리(2011.2.17.), <http://www.edaily.co.kr>
- 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 중앙일보(2011.5.5.), <http://www.joongang.co.kr>
- 파이낸셜뉴스(2011.7.20.), <http://www.fnnews.com>
- 한국경제(2011.7.31.), <http://www.hankyung.com>
- 한국일보(2011.5.16.)(2011.7.27.)(2011.8.19.), <http://news.hankooki.com>
- YTN(2011.5.9.), <http://www.ytn.co.kr>

The Accounting Fraud Case of Busan Savings Bank

Jiryung Kim* · Joonho Lee** · Sunkook Kwon***

Abstract

The operations of Busan Savings Bank, the country's biggest savings bank, and its four affiliates (the banks) were suspended in February 2011. A property market slump was started i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but the banks continued to focus on project financing (PF) loans, which were generally unsecured without any collaterals and related to high risks and high returns. The banks' assets were seemingly increased, but the delinquency rates for PF loans rose and the loans are defaulted. The banks were discovered to have extended massive illegal loans to their major shareholders using special purpose companies (SPC), which were established by the management with a conspiracy. The original role of the banks is to provide low-income wage earners and small businesses with savings and loan services as a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but the banks were used as a private fund. The banks committed financial statements frauds and then issued and sold a lot of subordinated bonds, which were unprotected from losses caused by a bank's inability to pay its debts when due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The instruments could generate a higher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ratios, a measure of capital adequacy ratio, over 5 percent of the government's recommendation. The ripple effects from fraudulent profits resulted in a wide variety of frauds. There are countless victims of the banks' scheme and corruptions.

External auditors neither detected massive illegal loans nor accounted an appropriate level of allowances for doubtful accounts to estimate how much the receivables would not be collected and to exclude that amount from being recognized on the income statement. The savings bank which started as mutual credit funds began to grow using the relaxed regulations to offer high interest rates to attract deposits and to expand risky loans and investments. Poorly designed laws, the regulatory incompetence and the connivance of irresponsible authorities have also resulted in the banks' widespread corruptions.

*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jr_kim@knu.ac.kr)

** Ph.D Stud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bama90036@knu.ac.k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kwon@knu.ac.kr)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banks'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using the case of the banks, the biggest corruption case of savings banks, furthermore this case is used for an education to detect and prevent accounting frauds. We expect contribution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of savings banks and to establish effective regulations.

Key Words: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Busan Savings Bank and its Affiliates, Case, Financial Statements Fraud, PF Loan

〈Teaching Note〉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부정 사례

I. Synopsis

2011년 영업이 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을 바라보면서 대표적인 부산저축은행을 사례로 하여 그 부실과 비리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규제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세워진 제2 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부산지역 최대 저축은행이었다.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과 그 관계사 4개 저축은행 모두 영업정지 되었고, 2011년 4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 5개사 모두 자본잠식 및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기준미달로 드러나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은 PF대출의 부실로 시작되었지만 부실의 이면에는 대규모로 벌어진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회계부정과 불법대출, 금융당국의 비리연계,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이 관련되어 있었다.

II. Teaching Point

본 사례는 회계학전공 3학년 또는 4학년의 회계감사, 재무제표분석, 회계윤리 등의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MBA과정의 회계학 수업의 사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사례를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과 연계하여 토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조 6천억원의 불법대출,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감행한 것으로 밝혀진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통하여 분식회계의 정의, 방법 및 사전적 징후,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부정 간의 관계, SPC의 설립과 유용,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의 조작 방법, 흑자분식을 악용한 또 다른 부정, 부실감사의 원인과 대책,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영향과 감독 강화방안을 생각해본다. 사례분석으로 기업의 부실을 가져온 원인을 규명하고 분식회계를 적발하며 더 나아가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업의 진행방식은 수업 이전에 사례의 본문을 참고하여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이 의견을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저축은행의 투명성 제고방안, 우리나라의 회계환경 및 감독여건상 한계점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III. Assignment Questions

1.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경영실패를 숨기고 기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경영진은 각종 분식회계를 시도한다. 분식회계를 이익조절과 구분하

- 고, 분석의 방법 또는 유형을 설명하라. 그리고 일반 투자자로서는 분석회계를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사전적 징후 또는 위험신호의 예를 들고 부산저축은행에 적용하라.
- 부산저축은행에서 내부부실을 가져온 최대주주 및 경영자의 비리와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의 본연의 역할과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를 비교하라.
 - SPC의 설립을 통하여 불법대출과 분석회계를 하였던 부산저축은행을 엔론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통하여 BIS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려고 분석하는 이유와 BIS비율을 조작하는데 이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은행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BIS자기 자본비율과 더불어 참고할 건전성 지표를 제시하라.
 - 부산저축은행이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분석회계를 하는데 동원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라.
 - 부산저축은행이 공격적으로 흑자분식을 감행하였고, 그 파급 효과를 또 다시 악용한 예를 제시하라.
 -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왔다.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 부산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감사하게 된 배경과 되풀이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법인 입장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라.

- 금융정책 및 감독이 저축은행의 부실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라.
- 회계부정과 관련된 저축은행 경영진, 감독당국, 외부감사인, 주주 등에 대하여 인간적인 측면에서 통찰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라. (구체적인 제도보완은 문제 10.)
-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자산운용에 과도하게 치중하였고,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하에서 여신금융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신심사 역량을 개선하는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부실이 심화되었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IV. Analysis

-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경영실패를 숨기고 기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경영진은 각종 분석회계를 시도한다. 분석회계를 이익조정과 구분하고, 분석의 방법 또는 유형을 설명하라. 그리고 일반 투자자로서는 분석회계를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사전적 징후 또는 위험신호의 예를 들고 부산저축은행에 적용하라.

분석회계와 이익조정의 구분:

기업의 경영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기업회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분식회계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오도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김문철·황문호 2007). 분식회계에 광의의 의미로 이익조정, 이익조작, 이익유연화, 회계 부정 등을 모두 포함한 연구도 있다(고덕필 2005). 이익조정은 GAAP의 허용범위 안에서 회계처리나 회계추정을 선택 조정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GAAP을 위반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는 이익조작이라고 하며 회계부정이나 부정재무보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익유연화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변동폭을 조정하여 유연화시키는 행위로 이익조정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분식회계의 방법/유형: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서 경영성과가 저조하면 분식회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분식회계의 유형은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Schilit(2002)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식회계의 유형에 대하여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의 조기 인식 및 부실 매출액의 계상, 둘째, 가공매출액의 계상, 셋째, 일회성 수익으로 이익을 과대계상, 넷째, 당기비용을 전기나 차기로 처리하여 계상, 다섯째, 부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과소계상, 여섯째, 당기매출을 미래시점에 인식, 일곱째, 미래에 인식할 비용을 특별손실로서 당기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신동표·강남규(2003)는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첫째, 수익의 과대계상(매출수익의 조기실현 및 가공매출의 인

식), 둘째, 비용의 과소계상(공격적 자본화 및 자의적 상각), 셋째, 자산과 부채의 허위보고, 넷째, 손익계산서 항목분류의 조작, 다섯째, 현금흐름의 보고시 항목의 분류조작 등을 들고 있다.

분식회계 기업의 사전적 징후/위험신호:

기업의 재무비율을 분석할 때 외형 규모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과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 손익구조의 질적 분석을 통해 꾸준히 순이익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외형인 영업수익은 최근 3년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반영하기 이전에도 회계연도 2008, 2009, 2010에 각각 787억원, 376억원, (-)1,085억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 2008, 2009, 2010에 각각 768억원, 279억원, (-)1,999억원이었고, 금감원의 2011년 실사결과를 반영하면 2010년의 실제 당기순손실은 9,025억원으로 7,026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자가 분식을 시도할 유인을 증가시킨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금흐름은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현금유입은 차입금의 증가나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흐름을 이용한 분석이 효과적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창출능력은 기업의 부도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서 당기순이익보다 최근에 더 자주 이용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회계연도 2008, 2009, 2010에 각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7,247억원, (-)4,836억원, (-)3,827억원이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도 순감소였으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유상증자로 순증가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현금흐름은 순증가로 나타날 수 있었다.

당기손익과 현금흐름의 변동 이외에도 매출채권이 나 재고자산의 비중이 매출액이나 총자산에 비해 크고, 유형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보다 특별이익의 비중이 크거나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높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김문철·황문호(2007)에서 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며 유동성이 악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유발되고, 발생액이 증가될수록, 재고자산과 비영업성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순이익 대비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많이 계상될수록 분식회계의 징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관·최국현(2003)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에 의해 감리가 수행된 1,93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동부채 대비 현금흐름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율이 높을수록, 특수관계자채권 비율이 높을수록, 소액주주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감사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는 감리지적 기업들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채 유동부채 대비 현금흐름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Big5 제휴법인이 아닌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일수록 감리지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광윤·김영태(2003)는 분식회계 발견을 위하여 순이익보다 작은 영업활동현금흐름, 매출액보다 빠른 매출채권의 증가, 낮은 재고자산회전율, 총자산 대비 높은 무형자산비율 등을 참고할 것을 언급하였다.

2. 부산저축은행에서 내부부실을 가져온 최대주주 및 경영자의 비리와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의 본연의 역할과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를 비교하라.

최대주주 및 경영자가 시도하는 회계부정과 기업지배구조 간의 관계:

회계부정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와의 관련된 특성은 첫째, 미국의 회계 및 감사 관련하여 적발된 회계부정의 72%가 최고경영자와 관련되어 있고, 둘째,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가 취약해서 존재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며, 셋째,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40% 정도가 기업의 경영진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넷째, 20%에 해당하는 기업의 창업자나 대소유주가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asley et al. 1999). 또한 Klein(2002)은 분식회계는 아닌,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였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비정상적 발생액, 그리고 이사회 독립성과 비정상적 발생액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독립성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감소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발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적인 지위로서 경영에 참여할 때 재무구조상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최대주주와 경영자가 분식회계에 깊숙이 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에게 집중된 기업지배구조였고, 분식회계를 자행한 최대주주와 경영자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통제장치가 결여되었고 존재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기업지배구조였다. 소유의 집중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가능한 구조 하에서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외부감시 및 통제기능도 방치될 가능성이 커진다. 박연호, 김양, 김민영 등 대주주 및 경영진의 지분이 36.62%, 우호지분 12% 등 최대주주인 박연호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부산저축은행의 60.48%를 차지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95.18%, 30%, 54.55%, 50%에 해당

하는 지분을 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을 정점으로 4개 관계사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고히 장악한 상태였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략하기 쉬운 저축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이러한 금지 위반을 은폐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SPC를 설립하여 독립된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4조 5,942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에 이용하였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전체의 PF 잔액 5조 2,000억원의 8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업지배구조가 소수에 집중되어 개인적 비리 또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주주는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에서 제3자에게 200억원을 대출하면서 그 중 44억 5,000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그 며칠 전부터 친인척 명의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출금하였다.

내부통제시스템:

기업의 통제구조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외부통제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 최고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이 있고 외부통제장치로는 외부감사인, 금융감독기구 등의 규제기관, 기준제정기관, 투자자, 채권자 등이 있다(전선애·이민환 2008). 기업이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지려면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투자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최대주주, 경영자, 그리고 이사들의 공모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외부통제장치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에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상임감사가 재직하면서 대표이사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감사 본연의 역할인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정에 관한 감시기능을 포기하고 이들의 탈선에 적극 가담하였다.

3. SPC의 설립을 통하여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를 하였던 부산저축은행을 엔론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SPC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한회사로 간주되어 설립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설립자가 이 법률에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므로¹⁷⁾ 사실상 금융위원회도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SPC의 사업주는 모기업에 재무구조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차입수준을 초과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양도성 있는 지분증권이나 사채권을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들은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이 간편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SPC를 이용하였다.

엔론과 부산저축은행이 SPC를 설립한 순서 및 용도는 다음 <표> 및 <그림>의 1)-5)와 같다. <그림>은 Baker and Hayes(2004)의 엔론 관련 SPC 유한회사의 요약된 그림을 토대로, 부산저축은행의 상황을 추가하였다.

1) 1997년부터 수익을 내지 못하던 엔론은 자산을 매각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회사 내 여러 개의 투자 펀드를 만들었다. 이러한 펀드들과 다시 SPC를 설립하였다(Benston and Hartgraves 2002). 엔론의 SPC의 설립 배경을 하나 소개한다.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993년에 엔론은 캘리포니아주 연금기금인 CalPERS와 50%씩 투자하여 JEDI라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1997년에 CalPERS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엔론이 스폰서하는 SPC인 Chewco를 설립한다. Chewco는 엔론과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SPC이나, CalPERS 인수자금을 마련하도록 엔론이 은행에 보증을 선다.

2) SPC의 소유주는 모회사의 대주주 경영진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모회사의 직원이 책임지고 운영하였다.

3) SPC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유한회사로서, 당시 미국 회계기준에 의하면 외부 지분비율이 3% 이상이면 자회사가 아닌 독립회사로 간주되었고, 연결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4) 엔론은 특수관계인으로 만들어진 사모펀드를 통하여 SPC를 만들고 헷지거래약정을 하였다. 엔론

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SPC가 엔론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상쇄함으로써 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은폐하였다. 그러나 엔론이 SPC의 설립시 그 소유주식을 자본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엔론의 주식이 가치가 떨어지면 SPC는 지불능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엔론은 SPC와의 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이태엽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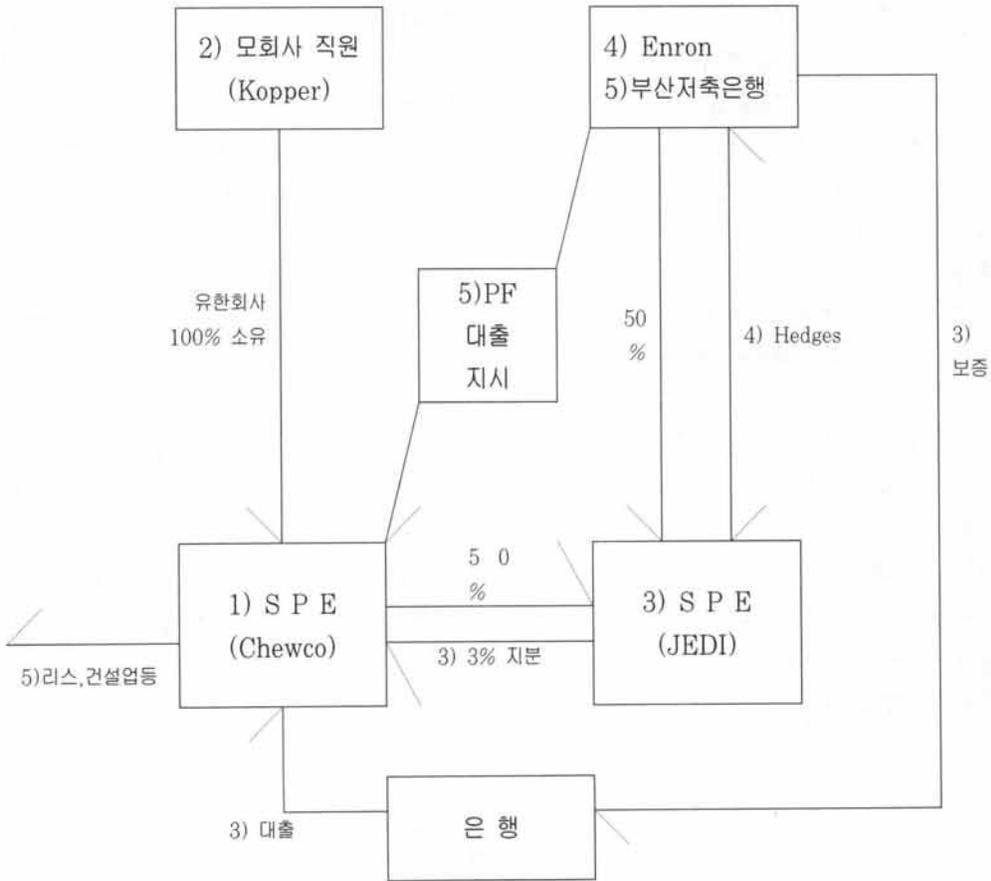
5)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SPC를 설립하고, 사실상 대주주 자격으로 SPC를 지배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내부직원에게 PF대출을 지시하였다. SPC를 120여개 만들고 PF대출의 88% 정도를 자신들의 PF 사업에 이용하였고, 내부 직원들은 부실담보임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PF 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들의 이익으로 유용한 반면, 피해는 예금주들에게 투자손실로 손해를 입혔다.

〈표〉 엔론과 부산저축은행이 SPC를 이용한 유사점과 차이점

<p>유사점:</p> <p>회사가 빠른 성장을 하려면 내부에서 생성되는 자금 외에 차입이나 증자로 조달하는데, 그 외 수단인 SPC는 투자자 자금을 활용하면서도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p>	<p>1) SPC에 모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이를 유동화하고, 그 자금으로 모회사는 차입금을 상환하여 부채를 낮춘다. 동시에 자산처분으로 차익이 발생하기도 한다.</p> <p>2) 모회사의 직원은 SPC의 형식적인 소유주로서 급여, 수수료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득을 취하였다.</p> <p>3) SPC가 자산의 최소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출자할 외부의 독립된 투자자를 찾는다면 SPC는 모회사의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의 투자자가 자금을 마련하도록 모회사가 도와준다. SPC 지분의 나머지 97%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게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증을 서기도 한다(Schwarzc 2002). 국내 여건도 SPC가 유한회사로 분류되어,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p>
<p>차이점:</p> <p>엔론은 SPC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SPC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p>	<p>4) 엔론은 자산 중 일부를 SPC에 매각함으로써 차입금을 감소시키고, 악성자산을 제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¹⁸⁾ 또한 엔론은 투기적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SPC에 넘기는 헷지계약을 맺었다.</p> <p>5) 부산저축은행은 SPC를 통하여 PF대출을 받아서 개인의 사금고처럼 이용하였고, 경영진들이 사실상 PF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다.¹⁹⁾</p>

18) 엔론은 4분기 말이 다가오면 보유한 자산의 가치평가 손실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자 SPC에 자산을 매각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1분기에 재구매하는 거래를 하였다(Stice and Stice 2006).

19) 금융업체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금산분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림〉 엔론과 부산저축은행의 SPV 이용도

4.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통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려고 분식하는 이유와 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데 이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은행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BIS자기자본비율과 더불어 참고할 건전성 지표를 제시하라.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이유: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8·8클럽 제도에 의하여 동일 차주에게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다. 8·8클럽이란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요건을 동

시에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8·8클럽은 80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이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반기 결산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감행한 것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의 조작 방법: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비율이다. 이를 조작하는 수법은 다양할 수 있다. 우선 비용, 지출, 손실 등의 항목은 감소시키고 수익의 항목을 증가시켜 자본의 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에 공시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 위험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과 같은 금융기관 예치금을 유치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한 여신자에게는 신규로 대출하여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하여 정상 여신으로 전환한다. 불량한 여신에 대하여 허위로 담보를 추가하여 정상 여신으로 분류한다.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고 제3자 대출로 위장하여 불량한 여신을 제거한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제3자의 이름을 빌어 유령회사인 SPC를 만들고 이에 불법투자를 하고 부실이 생겨도 정상 여신으로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가공으로 건전해진 BIS자기자본비율로 고위험, 고수익의 후순위채를 남발하면 BIS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할 수도 있다. 금감원 및 회계법인과 유착하여 수치를 조작하기도 한다.

BIS자기자본비율의 수정안 및 추가로 참고할 건전성 지표:

BIS자기자본비율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백분율인데,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제조업과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안정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은행의 자산은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보다 각종 대출금을 비롯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구성되고, 동시에 상환불능 위험이 존재하므로 분모인 총자산을 계산할 때 단순히 합산하지 않고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현금 은 전혀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며,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10%, 주거용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은 50%,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금은 100%

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한다. 한편 분자인 자기자본에 대손충당금과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이 포함된다.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고 다만 은행이 손실을 예상해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은행 자신의 자본으로 간주한 것이고, 은행이 도산할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마지막으로 밀리는 후순위채권도 만기가 5년 이상인 것은 주식발행과 비슷한 넓은 의미의 자본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자본건전성이 은행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서 은행이 만일의 예금지급 불능위험에 대비하여 자기자본을 얼마나 충분히 쌓아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증자나 은행이익의 증가가 발생하면 자본항목이 커져서 BIS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간다(최석규·오현탁 2008).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증가시키고자 그 발행요건에 적합하도록 회계분식을 하였다. 이와 같이 BIS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건전성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례를 통하여, 후순위채를 제외한 진정한 자기자본 대비 자산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2009)는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영향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영업정지라는 외부적인 감동충격이 있을 때 더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바젤협약²⁰⁾에서 강조하는 BIS자기자본비율은 물론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주의를 꾸준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상조(2011)는 2007년 이후에 저축은행 전체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은 9%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위험가중

20) 2004년 국제결제은행과의 협의로 2008년 초부터 적용하는 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신바젤협약은 모든 대출자에게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것을 대출받는 대상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0-1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자산)과 단순자기자본비율(대차대조표상 자본/자산)은 이 기간 중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건전성 지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BIS자기자본비율만으로는 신뢰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고정이하어신비율은 2007년 이후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역시 실제 자산의 건전성 악화 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기간 중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나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부산저축은행이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하는데 동원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는 장래 회수가 불가능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대손의 위험이 존재한다. 거래처가 파산하고 고객이 채무이행에 불성실하기 때문에 기업이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을 때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계정을,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차감계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상의 수취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흔히 제조업이나 상품매매업은 가공매출로 수익의 과대계상, 또는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으로 이익을 과대계상한다. 부산저축은행도 기본적으로 부실채권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고, 다음과 같이 더 공격적인 방법도 동원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자

를 연체중인 SPC에 신규로 대출하여 이를 채무변제 및 대출금의 연체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고, 부실화된 자산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하였다. 즉 신규 차명대출금으로 구 차명대출금을 갚았고, 신규 대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대출금은 원금상환 보다는 주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하여 사용되었다.²¹⁾ 이 방법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필요 없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우량저축은행으로 분류되었다.

6. 부산저축은행이 공격적으로 흑자분식을 감행하였고, 그 파급 효과를 또 다시 악용한 예를 제시하라.

흑자분식의 악용 사례:

회계연도 2009(2008.7.1.~2009.6.30.) 및 2010(2009.7.1.~2010.6.30.)에 걸쳐 2조 4,533억원 상당의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그 인위적인 흑자분식에 근거하여 대주주 및 경영진이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다. 2009년에 대주주에게 배당된 내역은 26억원에 해당한다. 2009년에 대주주 및 경영진이 받은 급여 및 상여금도 22억원이다. 막대한 손실로 배당이 불가능한, 은행의 존폐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위장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 4명이 정기배당, 중간배당,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63억원을 수령한 것이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1.5.2.).

흑자분식을 그대로 믿은 고객은 실적이 양호한 부산 최대 규모의 저축은행에 수신고를 증가시켰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도 별로 의심하지 않고 구입하였다. 금융당국에 가공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보고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부실은 더 깊어진 것이다. SPC로의 불법대출도 제약없이 추가로 대출되었고, 그 대출금 중 일부는

21)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차명 차주 98명에게 6,015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는 주급납입, 부지매입, SPC 운영자금 등에 이용되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2,700억원은 구 차명대출의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경향신문 2011.6.4. <http://www.khan.co.kr>).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환원되어 영업수익을 증가시켰다.

2010년에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PF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할 것이 요구되었다.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시하였다. 2009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사례 본문의 <표 7>과 같이 부산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5,800억원이나, 6,079억원의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279억원으로 가공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을 갖춘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고 모장학재단과 모학교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결국 피해를 보았다.

7.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왔다.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 부산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감사하게 된 배경과 되풀이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법인 입장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역할: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발맞춰 신 국제감사기준이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감사기준은 개별 거래 내역에 치중해 온 과거 감사와 다르게, 기업의 리스크가 큰 부분에 감사인력과 시간을 집중하는 리스크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룹기업 재무제표감사 때 주 감사인이 자회사 감사인과 긴밀히 협의해 전체 감사를 주도할 수 있게 하였다(한국공인회계사회 2009).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

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 확신을 확보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국제감사기준의 목적상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 즉 부정한 재무보고, 자산횡령 등에 의한 왜곡표시에 관심을 두는데,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할 때 법률적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이를 김성진(2010)은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방조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지 말고, 그 부정의 발견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로 해석하였다.

연대책임, 무한책임 및 입증책임:

외감법 제17조에 의하면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한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0.5.17.). 감사인에게 정도는 미약하더라도 과실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현행 외감법 제17조 제4항 및 이를 준용하는 자본시장법상의 각 조문은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종찬·장금주(2010)는 연대책임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의 주도자와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동일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과거에 국내 4위 규모의 안전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한 코오롱 TNS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총 8건, 합계 약 200억원의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당하면서 최종 판결 이전에 채권압류 등으로 2007년 6월 해산되었는데, 당시 연간 감사보수는 2,500여만원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5년 증권민사소송법에 비례책임 조항을 신설하였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를 도입하였다. 공동피고가 중

권사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그 외에는 각자 자신의 책임에 비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비례책임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대책임의 범위 하에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법률신문 2012.4.23.).

이창우 등(2006)은 현행 규정상의 무한책임과 입증책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감사인의 책임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인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시 하였다. 비례책임제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감사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부담함으로써 과중한 부담을 막고 남소(濫訴)를 예방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민법과는 달리, 외감법 제17조 제5항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감사인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연대책임과 맞물려 남소의 원인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증권집단소송개혁법을 제정하여 원고에게 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남소방지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환원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을 부실하게 회계감사한 배경: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방조가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것은 이미 언론사태가 보여주었다. 부실감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고의로 부정을 덮는 것은 회계법인이 모르고 하면 관찮다는 식으로, 언론사태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문제가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SPC를 이용한 것 자체가 국내 회계기준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차명을 이

용한 120 여개의 SPC는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직접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금산분리원칙도 위반하였고, SPC를 이용하여 부외부채를 덮음과 동시에 이자수익의 상당 부분도 회계조작한 것으로 사후 확인되었다. 공인회계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장부만 보고 SPC의 차명 여부를 밝혀낼 수 없다고 하고, 저축은행을 감사한 것이지 SPC를 감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금 집행까지 검토하는 것은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계사들은 반발한다. 과거 20년 동안 회계부정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관련 회계사들이 처벌받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후 처리가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유형의 회계분식이 되풀이됨은 이러한 처벌이나 법적 책임의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다.

국내법인은 회계법인과 총액제로 계약하기 때문에 회계사가 문제를 발견하고 감사시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수임료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감사시간을 늘릴 유인이 없다. 또한 자유경쟁 체제에서 기업들은 감사품질에는 관심이 없고 낮은 감사수임료를 제시한 회계법인을 선택하게 된다. 낮은 감사수임료는 감사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최근에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공시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감사범위가 확대된 것에 비하여 감사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중된 12월말 회계연도로 인하여 짧은 기간에 회계 감사를 완료하고자 최소 범위의 표본조사에 그치고, 업종별로 차별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계감사가 실행되므로 부정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정도의 전문성있는 회계사가 투입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감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부정 적발도 가능하고 감사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은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의 적정여부에만 관심이 있고, 감사품질에는 무관심하다.

감사품질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최종학 2012). 첫째, 업종별·기업별 적정한 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시간이 감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둘째, 회계법인의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감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회계법인 내 인력배치와 감사시간 배분,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 여부 등을 감리한다. 셋째, 금융감독원 감리를 더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매년 더 많은 회사를 감리 표본에 포함시키고, 감리결과를 더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회계연도를 분산시켜야 한다.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해서라도 기업들의 회계연도가 분산되면 개별기업 감사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될 수 있다. 다섯째, 회계법인이 개별 기업과 맺는 감사계약을 현재와 같은 총액제에서 시간당 보수제로 변경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정해진 만큼 표본을 추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 종류, 중요성 등에 따라 감사 투입시간을 늘리는 것도 계약서에 명시한다. 여섯째, CEO나 CFO가 직접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를 잘 아는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8. 금융정책 및 감독이 저축은행의 부실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라.

금융정책 및 감독이 저축은행의 부실에 미친 영향:

1980년대 미국에서 Savings and Loan (S&L)의 부실을 겪으면서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시스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1년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가 연방예금보험

공사 개혁법(FDIC Improvement Act: FDICIA)을 제정하였다. 상시감독기구가 감독유예 현상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함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시감독기구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위기관리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²²⁾ FDIC(1997)는 정부규제기관으로서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금융기관이 급속하게 성장할 때 감독기관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이 규제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셋째, 규제기관의 재정적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 넷째, 부실 금융기관이 발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예금보험공사 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금융시장임을 확인시킨다.

국내 규제기관의 완화된 정책과 허술한 감독이 저축은행의 부실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근본적인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시적인 처방으로 인하여 금융당국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2000년대 초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장려했지만, 카드대란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축은행이 고위험의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게 된 배경도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크다. 2005년 이후 추진된 8·8클럽에 대한 여신규제나 저축은행 간의 M&A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는 저축은행의 부실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금융정책이 잘못 이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22)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예금자보호법 제27조),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위기관리기구인 예금보험공사보다 우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공시 규정도 예금자들이 부실의 징후를 인식하는데 미흡한 수준이다. 반기보고서가 공시되어야 하지만 그 시한이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불리한 재무정보를 당연히 공개하기를 꺼린다. 공시 방식도 홈페이지에 예고도 없이 게시하는 방식이므로 고객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얻기 힘든 체제이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 이하로 하락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BIS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는지 또는 대출채권의 평가 후 적절한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이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이 예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감독절차는 오직 뱅크런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듯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보고받고 경영평가위원회도 열지만 이는 예금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BIS자기자본비율이 갑자기 1% 미만으로 급락할 경우 예고도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되므로, 고객은 실적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영업정지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은 정도가 심각하다.

철저한 감독정책이 준비되지 않은 채 저축은행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부실을 키웠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로 시작하여 일반 은행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여신금지업종과 저신용층을 주된 시장으로 삼아 경영하였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신금지부문 제도 폐지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무영역을 상실하였다. 우량고객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확보한 시중은행으로, 저신용층은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사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종 게이트 사건에 연계되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불리해진 영업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1년부터 1인당 예금보호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02년 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저축은행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저축은행의 성장을 지원한

것이다. 은행은 대주주 지분이 4%로 제한되지만 저축은행은 100%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 전환이 쉽게 일어나는 구조이다. 그런데 일단 부실해진 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유도한 정책이 그 부실 규모를 더 키웠다. 2008년에는 우량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구역 외 최대 5개까지 지점의 신설을 허용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한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11월까지 대전저축은행의 손실을 BIS자기자본비율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3년간의 예외규정 적용을 받으면서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BIS자기자본비율을 공시하였다. 부동산 가격이 2007년 이후 하락하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실 PF가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2008년부터 3년간 발생한 부실을 숨길 수 있도록 정부가 일조한 것이다.

9. 회계부정과 관련된 저축은행 경영진, 감독당국, 외부감사인, 주주 등에 대하여 인간적인 측면에서 통찰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라. (구체적인 제도보완은 문제 10.)

회계부정 관련 이해관계자: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여기는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금융당국의 임기응변식 정책과 뒷북 감독, 회계법인의 낮은 수임료에 걸맞은 무책임한 감사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SPC에 진출할 무렵, 이미 2004년 12월에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하였다. 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은 120여 개의 SPC를 설립하여 불법대출을 하였고, 이렇게 받은 자금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SPC가 벌인 사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불법대출 중에 임원들은 개인채무를 변제하고자 횡령하기도 하였다. 은행의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회계

분식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고,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하였다. 비리의 직접 당사자인 대주주나 직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금감원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돕는 역할을 하였고, 금감원 현 직원은 뇌물을 받고 비리를 묵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은 사실상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소기준에 미달하지만, 부실한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의 부실을 BIS자기자본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 5% 이상으로 공시할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비율을 안전하다고 믿고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이다. 회계법인이 부실한 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감사 대상 회사가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면 단기간의 감사에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변명하나, 회계감사가 철저하게 실행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은 문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한편 주주들은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의 적정성 여부는 관심을 갖지만 감사보수를 충분히 지급하면서 적정한 감사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적정수준의 감사시간과 수입료에 관한 정보가 제시된다면 주주들도 적정수준과 실제수준을 비교하여 감사품질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식 전환과 협력, 상호 견제하는 제도 보완이 있을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0.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자산운용에 과도하게 치중하였고,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하에서 여신금융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신심사 역량을 개선하는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실이 심화되었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저축은행 제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1.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 검사로는 지능화된 대주주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정하여 대주주의 불법 행위 적발시 대주주에 대하여 금감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대주주의 불법대출과 같이 대출 실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불법 대주주에 대해서는 행정적, 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전문성이 결여된 비금융권 출신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경영감시 기능이 취약하였다.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고자 자산 일정 규모이상의 저축은행은 경제, 경영 및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부당행위가 빈번한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취약하므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한 경영 유도: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한다. 소위 8·8클럽제도라 하여 개별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80억원의 규정을 철폐하고 자기자본의 20%까지 허용함으로써 부실을 키웠다. 우량저축은행의 수가 증가하면서 선별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2005년 말 33개에 불과하던 우량저축은행

이 2010년 말 50개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여신금액 한도를 설정함이 요구된다.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동일 PF사업장 내 2개 이상의 복수의 차주에 대하여 대출한 경우가 빈번하였다. 사실상 동일한 신용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동일차주 차원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당초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하여 M&A를 통한 시장안정, 예보기금 절감 등의 취지로 저축은행 간의 인수를 허용하였으나, PF사업 공동대출, 고위험 유가증권 공동투자 등으로 인한 계열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가져왔다.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을 통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하여 계열화를 방지한다. 그리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여 계열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현행 규정상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해외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별도의 투자한도 규제없이 저축은행이 자기자본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였다. 고위험 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축은행이 SPC의 대출을 취급하여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을 회피해왔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SPC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우회적인 투자한도의 회피를 차단한다. 대부분 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경영진의 여신심사 관여, 여신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 검토절차가 부재하여 여신심사 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이 저해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여신집행 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체감리를 의무화하여 여신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결산공시 주기를 단축하여 반기에서 분기별로 정기공시 하도록 하고 수시공시 항목을 확대하며 BIS자기자본비율 보고서 외부

감사인 검토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강화한다. PF대출을 비롯한 업종별 대출 현황(연체율, 자산분류, 규모 등)을 정기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사실을 수시공시 한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지명 의뢰 기준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후순위채를 판매하고 광고규제가 없어서 거래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향후 후순위채 광고시 예금자보호 여부,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 채권을 직접 판매는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한다. BIS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등의 최근 경영지표가 반영된 핵심설명서를 통해 알기 쉽게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받도록 하여 이러한 증빙 절차를 의무화한다(금융위원회 2011.7.25.).

참고문헌

- 고덕필(2005), "분식회계의 예방과 적발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산업경영연구*, 28(1), 181-205
- 김광윤·김영태(2003), "분식회계에 대응한 기업의 윤리와 감사인의 책임," *세무학연구*, 20(1), 193-219
- 김문철·황문호(2007), "분식회계기업의 적발," *회계저널*, 16(3), 1-34
- 김상조(2011),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성진(2010), "미국판례법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책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 227-253
- 박정희(2009), "상호저축은행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재무관리연구*, 26(1), 95-125
- 박종찬·장금주(2010),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그리고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 *KBR*, 14(1), 135-155

- 신동표·강남규 역(2003), 은밀한 숫자놀이 분식회계, 국
일증권 경제연구소, Mulford, C. W. and E. E.
Comiskey, The Financial Numbers Game:
Detecting Creative Accounting Practices
- 이창우·고종권·전규안(2006),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5(2), 1-30
- 이태엽(2010),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 대책," 감사실무, 122, 12-14
- 전선애·이민환(2008),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
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험개발
연구, 19(3), 229-261
- 최관·최국현(2003), "회계부정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감리지적기업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8(2),
211-243
- 최석규·오현탁(2008), "예금보험제도의 은행부실 진단
과 조기경보 인자 검증," 산업경제연구, 21(6),
2597-2625
- 최종학(2012), "적당히 하는 감사가 만든 저축은행 사태,"
DBR, 98, 90-94
- 한국공인회계사회(2009), "신 국제감사기준(New ISA) 전
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 Baker, C. R. and R. Hayes(2004), "Reflecting form
over Substance: The Case of Enron Corp.,"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15,
767-785
- Beasley, M. S., J. V. Carcello and D. R. Hermanson
(1999),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1987-1997: An Analysis of U.S. Public
Companies,"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 Benston, G. J. and A. L. Hartgraves(2002), "Enron:
What Happened and What We Can Learn
from it,"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1, 105-127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Division of
Research and Statistics(1997), *History of
the Eighties - Lessons for the Future*
- Klein, A.(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
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
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
nomics*, 33(3), 375-400
- Schilit, H. M.(2002), *Financial Shenanigans*,
McGraw-Hill
- Schwarcz, S. L.(2002), "Enron, and the Use and
Abuse of Special Purpose Entities in Cor-
porate Structures," *The Financier*, 9(1-4),
23-29
- Stice, E. K. and J. D. Stice(2006), "Motivation on
Day One: The Use of Enron to Capture
Student Interest,"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24, 85-96
- 금융위원회(2011.7.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
정 개정안 입법 예고,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개정 2010.5.1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금융구조개선과)(일부 개정 2011.7.14.), 예
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일부 개정 2008.12.26.),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011.5.2.),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기소 관련자료
- 법률신문, 2012.4.23., <http://www.lawtimes.co.kr>
-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SA(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240 The Auditor's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Fraud i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